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일시 2015. 3. 3(화)

오전 10시 ~ 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

사회 이종걸 국회의원

발제 박지환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토론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승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승건 대표 ((주)비바리퍼블리카)

윤민섭 선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금융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사단법인 오픈넷 주관 국회경제민주화포럼

■ Program

구분	시 간		내 용
사전 행사	10:00~10:02	2'	○ 개회
	10:02~10:05	3'	○ 국민의례
	10:05~10:10	5'	○ 내빈소개
기조 발제	10:10~10:20	10'	○ 기조발언 : 이종걸 의원 _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0:20~10:25	5'	○ 발제, 토론자 소개
	10:15~10:35	20'	○ 기조발제 : 박지환 변호사 _ 사단법인 오픈넷
토론	10:35~11:25	50'	<p>▶ 좌장 : 서희석 교수 _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 토론자 1.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_ 금융위원회</p> <p>○ 토론자 2. 김경환 대표 변호사 _ 법무법인 민후</p> <p>○ 토론자 3. 김승주 교수 _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p> <p>○ 토론자 4. 이승건 대표 _ (주)비바리퍼블리카</p> <p>○ 토론자 5. 윤민섭 선임연구원 _ 한국소비자원</p>
			○ 플로어 질의응답
			○ 마무리 말씀
폐회	11:50~	5'	○ 폐회

■ Contents

▶ 인사말씀(7 Page)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 축사(9 Page)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최고위원

—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 발제문(19 Page)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박지환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자문변호사

▶ 토론문 1.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41 Page)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토론문 2.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과 개정안(49 Page)

— **이승건 대표** (주)비바리퍼블리카

▶ 토론문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방안(55 Page)

— **윤민섭 선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 자료 1. IT·금융 융합 지원방안(61 Page)

▶ 자료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83 Page)

■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 만안구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먼저 펀테크 시대를 대비하는 금융보안의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시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신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와 오늘 전문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기 위해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서희석 교수님, 토론에 함께하실 김경환 변호사님, 김승주 교수님, 이승건 대표님, 윤민섭 박사님, 김동환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펀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관련 각종 규제를 풀면서 펀테크 산업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보안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펀테크 산업 드라이브는 금융사기 증가와 금융소비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2월 24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펀테크 드라이브 속에서 빈약한 금융보안 인프라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소비자에게 보안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펀테크 시대의 진전에 어울리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금융사들의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 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 중에 카드사를 제외하고 은행, 증권사 등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한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고 보안에 대한 투자는 금융산업의 기초이며 존재의 기반입니다. 금융보안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 펀테크 산업의 부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금융보안과 펀테크 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균형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 3.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종걸

■ 축하말씀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입니다.

먼저, 우리당 이종걸 의원께서 주최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자금융거래가 발달하는 만큼, 금융사기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한 보안 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할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회피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금융 회사 스스로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선진 보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하며, 발제를 해주실 박지환 변호사님을 비롯해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 축하말씀

안녕하십니까? 이석현 부의장입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종걸 국회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의 진보와 발달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과 관련한 편의성의 확장과 함께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금융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전자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민 금융의 경쟁력과 그것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됨으로서, 서민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실생활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선책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 2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석현

■ 축하말씀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기지개 펴는 봄을 맞아 이종걸 의원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도 새로운 기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은 이제 보편화를 지나 스마트뱅킹에 그 자리를 물려줄 만큼 금융 환경 변화의 흐름은 빨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펀테크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우리 법과 제도가 발맞추지 못하는 틈을 타,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금융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펀테크 산업이 활짝 꽂피어 금융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제민주화포럼이 주관하고 이종걸 의원님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신 오늘의 토론회가 금융사의 자율적 보안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우리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좌장을 맡아주신 서희석 교수님과 발제 해주신 박지환 변호사님,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무 위원장으로서 핀테크를 앞세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3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의원 정우택

■ 축하말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복의 봄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금융과 IT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ancial + Technology)가 새로
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금융거래시에도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기능이 있었지만 심심찮게
발생한 전자금융 관련 사고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가 확산되면 다양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과 허점들이 나타
나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금융서비스의 고도화와 IT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
운 유형의 기술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그만큼 손해배상의 책임
과 소재는 더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은 금융사

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금융 거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기준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체계화된 원칙아래 비교적 합리적인 책임 배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펀테크 시대를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안 강화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안 마련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종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안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법안을 둘러싼 생산적인 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유승희**

■ 축하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금융보안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와 여타 분야의 융합 현상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세계적 추세입니다. 금융 부문 역시 IT와 금융의 융합, 즉 펀테크가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펀테크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첨단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초로 소비자의 Needs와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는 펀테크산업의 속성과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펀테크 산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도 지난 1월27일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테크 산업의 발전은 금융보안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안이 전제되지 않는 편의성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산업 존립의 근간이 되는 금융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전자지갑을 사용해 보지 않은 고객이 약 40%에 달했는데 그 중의 절반이 보안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 시대에서 금융IT 보안은 ‘뚫는 자(창)와 막는 자(방패)’간의 끊임없는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전산침해 사고와 정보유출 사고의 교훈으로 금융회사들도 보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IT 보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전자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해킹기법과 기존 보안기술을 우회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보안을 확립하고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이용자-정부의 공동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고도화를 독려하는 등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금융보안원의 설립과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자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이용자의 피해예방과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금융보안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핀테크 시대에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합리적 책임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금융위원장 신제윤

발제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단법인 오픈넷 자문변호사

박지환

■ 기조 발제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단법인 오픈넷 자문변호사 박지환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

(1)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 세분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현행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을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이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가장 흔한 기술적 유형인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사고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문언해석 상으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해왔다.¹⁾ 또한 최근 발생한 농

1) 하급심 판례에서는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을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판단한 바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판결 등),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다만, 2013년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2013. 5.

협 텔레뱅킹 무단 인출 사건에서도 그 기술적 유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현행법과 같이 기술적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정해두면, 텔레뱅킹 무단 인출 사건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고의 중과실 면책조항의 확대해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이용자가 패소하였다. 나머지 2건 역시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위 사례 중 확정판결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된 사례는 없다.²⁾ 최근 하급심에서 이른바 ‘파밍’에 의한 사고거래로 발생한 손해에 금융회사가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으나 이용자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³⁾이다.

그 원인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조항의 해석이 모호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국내의 금융보안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당해 면책요건이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⁴⁾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사실상 강

22. 일부개정)에 이르러서는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으로 인한 사고 거래도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편,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라고 본 견해로는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2014) 참조.

2)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어려워…승소율 사실상 ‘제로’>, 연합뉴스 (2014. 12. 21.)

3) 법원은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인 은행의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 판결)

제되는 등 이용자에게 보안기술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융회사가 제공한 보안기술의 취약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게 되면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다.

(3) 도난 또는 분실 통지 전 이용자 보호 미흡

현행법 제10조는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해당 사유를 통지한 이후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고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는 금융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당해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난 또는 분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외 주요국에서처럼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유를 통지하기 전이라도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⁵⁾

2. 해외 주요국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 소개

가. 주요국의 접근매체 도난, 분실 사유 없는 경우 이용자 책임범위⁶⁾

구분	미국	EU	호주
----	----	----	----

4)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2014),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2014) 등

5) 한국소비자원, “전자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2010) p.126.

6) 금융보안연구원 “주요국 전자금융사고 책임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시사점”에서 재구성

		EU	영국	독일	
통지	60일 이내 통지 시 면제	13개월 이내 면제	13개월 이내 면제	13개월 이내 면제	최대 150 호주 달러
미 통지	60일 이후 통지 시 60일 이후 발생한 무권한거래 전액	13개월 이후 최대 150 유로	13개월 이후 최대 50 파운드	13개월 이후 최대 150 유로	고의 중과실 - 전액

나. 주요국의 접근매체 도난, 분실의 경우 이용자 책임범위⁷⁾

구분	미국		EU			호주
			EU	영국	독일	
통지	2영업일 이내	최대 50달러	13개월 이내 면제	13개월 이내 면제	13개월 이내 면제	최대 150 호주 달러
	3~60영업일 이내	최대 500달러				
	60영업일 이후	도난분실 통지 이전 피해액				
미 통지	60일 이후 통지 시 무권한거래 총액	13개월 이후 최대 150 유로	13개월 이후 최대 50 파운드	13개월 이후 최대 150 유로	고의 중과실 - 전액	

다. 미국 전자자금이체법(EFTA, Regulation E) 이용자 책임범위 ; Consumer Liability for Unauthorized Transfer

7) 금융보안연구원 “주요국 전자금융사고 책임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시사점”에서 재구성

Event	Timing of Consumer Notice to Financial Institution	Maximum Liability
Loss or theft of access device ⁸⁾	Within two business days after learning of loss or theft	Lesser of \$50 or total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Loss or theft of access device	More than two business days after learning of loss or theft up to 60 calendar days after transmittal of statement showing first unauthorized transfer made with access device	Lesser of \$500 or the sum of: (a) \$50 or the total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occurring in the first two business days, whichever is less, and (b) The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occurring after two business days and before notic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⁹⁾
Loss or theft of access device	More than 60 calendar days after transmittal of statement showing first unauthorized transfer made with access device	For transfers occurring within the 60-day period, the lesser of \$500 or the sum of (a) Lesser of \$50 or the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in first two business days, and (b) The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occurring after two business days. For transfers occurring after the 60-day period, unlimited liability(until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notified). ¹⁰⁾
Unauthorized transfer(s) not involving loss or theft of an access device	Within 60 calendar days after transmittal of the periodic statement on which the unauthorized transfer first appears	No liability.
Unauthorized transfer(s) not involving loss or theft of an access device	More than 60 calendar days after transmittal of the periodic statement on which the unauthorized transfer first appears	Unlimited liability for unauthorized transfers occurring 60 calendar days after the periodic statement and before notic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주요내용 소개

가.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구분 폐지 및 무권한거래 정의 도입

(1) 무권한거래 정의 도입

- 8) Includes 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if used without a card in a telephone transaction, for example.
- 9) Provided the financial institution demonstrates that these transfers would not have occurred had notice been given within the two-business-day period.
- 10) Provided the financial institution demonstrates that these transfers would not have occurred had notice been given within the 60-day period.

개정안은 ‘무권한거래’를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23호) 이는 미국 전자금융이체법(Electric Fund Transfer Act, 이하 “EFTA”)의 무권한 전자 자금이체(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¹¹⁾) 정의조항과 유사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1. ~ 22. (현행과 같음) 23.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의 승 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 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2) 무과실책임 범위 :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안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무과실책임의 대상인 사고거래의 범위를 기술적 유형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원화 하였다.(개정안 제9조 제1항)

11)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is an EFT from a consumer's account initiat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sumer without authority to initiate the transfer and from which the consumer receives no benefit.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u><후단 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u> <u>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u> <u>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u> 	<p>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 ----- <u>무권한거래</u>----- ----- ----- - .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3)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 :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 역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에서, 해당 거래가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정안 제9조 제1항 단서) 이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령 상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어, 이용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열거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유형

의 전자금융거래가 도입되는 경우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 행	개 정 안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1. <u>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u></p> <p><u><신 설></u></p>	<p>② ----- ----- ----- ----- ----- ----- ----- -----.</p> <p>1. <u>이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2월(이하 “이의제기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거래내용에 기재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권한거래(이의제기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u></p> <p>2. <u>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p>

나. 이용자가 2월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부터 발생한 무권한거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무한책임 부과 가능

(1) 거래내용 제공의무

현행법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거래내용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현행법 제7조 제2항),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 발생일로부터 1월 내에 거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이용자 모르게 무권한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기간의 거래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이용자가 무권한거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시점부터 2월의 이의제기기간이 기산되므로 거래내용 송달시점은 이의제기기간의 기산점으로도 의미가 있다.

(2) 이의제기시점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융회사 면책) 범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 이내에 무권한거래라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 등은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내용을 제공받고도 2월(이의제기기간)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부터 발생하는 무권한거래에 대

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등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점	이용자 부담
거래 후 1월 이내에 거래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	(1) 수령 후 2월 이내	없음
	(2) 수령 후 2월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에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다. 도난 및 분실사유 통지 시점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면책범위 차등화

현행법 제10조 제1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접근매체의 도난 및 분실사유의 통지 이후의 사고거래만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항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도난 및 분실 사유를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무권한거래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해당 사유를 적시에 통지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난이나 분실 사유가 무권한거래의 주 원인이 된 경우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무권한거래로 인한 손해의 일부는 이용자가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무권한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난이나 분실 사유가 무권한거래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²⁾ 한편 미국이나 EU 국가들이 통지 시점에 따라 이용자 부담의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화폐 가치의 변동 등을 고려하면 최대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유보원칙

12) 미국 전자자금이체법은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가 분실이나 도난 사유를 적시에 통지했었더라면 무권한거래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그 최대 한도는 법에서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개정안은 접근매체와 접근도구(개정안 제2조 제24호)에 도난 및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서 보듯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적시에 금융회사 등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 부분(금융회사의 면책)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다.

도난 및 분실 사유 통지 시점	금융회사 등 부담	이용자 부담
(1) 인식 후 2 영업일 이내	무권한 거래 총액 - 최대 5만원	최대 5만원
(2) 인식 후 2 영업일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거래 내용 수령 후 2월) 이내	무권한 거래 총액 -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3) 인식 후 미통지 또는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무권한 거래 총액 - (최대 50만원 + 이의제 기 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 권한 거래 총액)	최대 50만원 + 이의제기 기 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 거래 총액

라. 기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상 접근매체 외에 이용자가 거래지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접근도구’¹³⁾로 정의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24호) 개정안의 접근도구 정의 조항은 현행법의 ‘접근매체’가 열거된 수단이나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발달 추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추가되었다. 예컨대 현행법 상 접근매체에 열거

13) 참고로 미국 전자자금이체법(EFTA Regulation E)의 Access Device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cess device is a card, code, or other means of access to a consumer's account or a combination of these used by the consumer to initiate EFTs.”

된 수단이나 정보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각 번호, 일회용 OTP에 표시되는 비밀번호 등은 모두 현행법 상 접근매체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의 ‘접근도구’는 현행법의 접근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현행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형사처벌 규정에 적용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향후 두 정의조항은 결국 하나의 조항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접근도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지 않고 약관으로 금융회사 등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1. ~ 22. (현행과 같음) 24. “접근도구”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또는 접근매체나 다른 접근 도구와 결합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 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는 제외 한다)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 관”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추가 논의사항 및 법률해석

가. 추가 논의사항

(1) 거래내용 제공 방법

개정안은 거래 후 1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등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는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개별 거래내용의 통지도 개정안이 정한 거래내용의 통지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휴대전화 보급 및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서면보다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통지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손쉽고 확실하게 거래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개별 거래내용의 통지도 개정안 제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공으로 보면 특정 기간(1월)동안의 거래내용을 주기적으로 제공했을 때보다 이의제기기간의 종기가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면에 의한 통지에 비교하여 송달시점의 확정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는 점,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발생할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거래내용의 통지 방법을 정할 때에는 보안기술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합리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 및 분실이나 도난사유 통지 방법

개정안은 제9조 제3항에서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에 분실이나 도난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제기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에 발생한 무권한거래에 대해서 이용자는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개정안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책

임범위가 달라진다.

만약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분실, 도난사유의 통지방법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제정된다면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이나 EU의 결제서비스지침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무권한거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현행법의 ‘전자금융거래’¹⁴⁾는 사실상 ‘전자자금이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이는 현행법 상 전자금융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요건 등이 엄격해서 전자자금이체 외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그러나 이른바 팬테크(fintech)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무권한거래’ 관련 규정들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개정안은 무권한거래를 전자자금이체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하였다. 예컨대 최근 이른바 ‘전자지갑’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가 전자자금이체와 유사한 성격의 전자금융거래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 1. 27. 발표한 〈IT 금융융합 지원방안〉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현행법 제9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을 지는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¹⁵⁾ 제안한 바 있으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14) 최근 논의되고 있는 P2P 대출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도입되거나 현행 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안의 무권한거래 조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15)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2(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예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개정안의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나. 법률의 해석

(1) 무권한거래 및 면책사유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전자금융거래가 ‘무권한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래지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처럼 이용자가 접근 매체와 접근도구를 모두 공격자에게 넘긴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공격자에게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당해 거래는 ‘무권한거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보안기술 측면에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역시 중요한 역할을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IP 주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인의 위치, 이용자의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고유번호(MAC address), VPN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 거래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수취인에 대한 지급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공격자의 지급지시를 수행했더라도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금융회사 등은 면책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무권한거래가 분명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만연히 금융회사 등이 거래지시를 승인한 경우라면 금융회사 등은 당해 거래가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주장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

* (시행령 예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 부담금액,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재무구조 및 책임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능력을 측정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무관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무과실책임에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에 반영한 일부 대법원 판례 등¹⁶⁾에 비추어보면 금융회사 등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실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와 이른바 보안 3종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등¹⁷⁾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보안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오로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에만 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에서 조차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되지도 않으며 더욱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⁸⁾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어 금융회사가 제공한 보안기술의 취약성 및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용자에게 사고거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이와 달리 합리적인 보안기술의 선택 권한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고의로 거부하여 비로소 사고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

(2) 도난이나 분실 사유 인식 관련

16)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3.8.22. 선고 2013나34954판결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는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며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전자금융거래법 시 행령 제8조나 이 사건 기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을 근거로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17) 금융회사들은 보안기술의 대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안3종세트를 기존의 Active X 기술에서 .exe 형태로 바꾸어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보안프로그램 3종세트 퇴출? 기대를 버려야 하는 3가지 이유>, 허핑턴포스트, (2015. 1. 20.)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21/story_n_6499034.html

18)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비교사법 (2014).

개정안은 도난이나 분실 사유를 이용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되므로 도난 및 분실사유 인식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ETFA) Regulation E는 이용자가 매월 제공되는 거래내용을 수령했다는 것만으로는 도난 및 분실 사유를 인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conclusive evidence)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용자가 도난 및 분실사유를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3) 이의제기 또는 통지 지연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에 의해 이용자가 이의제기 또는 도난, 분실사유의 통지를 지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이의제기 등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이의제기기간이나 통지시점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대한 사유를 따로 열거하지 않았으며, 약관이나 판례의 축적에 따라 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전자자금이체법(ETFA)에서는 이용자가 불가항력에 의해 통지를 지연한 경우에 통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행이나 입원의 연장 등을 대표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¹⁹⁾

5. 예상효과

가.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배분 및 금융보안 합리화 단초

19) Timing of notice. If a consumer's delay in notifying a financial institution was due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such as extended travel or hospitalization, time periods for notification specified above must be extended to a reasonable time. (12 CFR 1005.6(b)(4); Comment 6(b)(4)-1).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이 각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각자가 부담하는 보안기술에 대한 책임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의의무가 배분되어, 무권한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합리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은 개인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에만 적용되며, 법인 이용자의 책임은 현행법과 같다.

(1) 금융회사 등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보안기술 선택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졌고, 금융회사 등은 합리적인 보안기술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보안기술의 취약성에 의해 발생한 무권한거래는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등이 이로 인한 손해를 철저하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개정안은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을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안기술 자율성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무권한거래 발생을 사전에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해야 사고거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이 보안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개인 이용자

개정안은 고의 중과실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이용자가 적시에 이의제기 또는 분실, 도난사유를 통지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금융기관 등의 보안현실 및 이용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조항에만 천착하도록 하여 이용자단에 보안책임이 과도하게 몰리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아예 문제삼지 않게 된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적시에 사고 여부나 도난 또는 분실사유를 통지한다면 무관한거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 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역할분담

금융회사들이 개정안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우²⁰⁾, 페이팔(paypal)과 같이 간편한 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펀테크 기업들이 전자자금이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책임 역시 펀테크 기업이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므로, 보안 기술이 고도화한 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경쟁적으로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강희주 이상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4)

금융보안연구원, “주요국 전자금융사고 책임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시사점”, (2013. 6.)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 (2013)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20) 금융회사들은 미국 등과 같이 전자자금이체 서비스 중 실시간 타행이체 등 보안사고 위험이 높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판결의 문제점”,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2014)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2014)

한국소비자원, “전자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연구”, (2010)

토론문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경환

■ 토론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경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 판결의 요약

- 파밍 사기에 대한 최초의 승소 판결
- 원고 36명 가운데 32명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 20% 배상 책임을 판결 했으나 1명은 공인인증서 재발급통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 배상, 그리고 나머지 3명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가족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은행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음
- 재판부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도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는바, 이는 원고들이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를 누출했지만,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들의 책임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논리임
- 재판부는 원고들이 파밍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를 기재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지만, 원고들의 중과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고, 다만, 파밍 사이트 접속경위와 정보유출 경

위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원고들의 배상비율을 피해금액의 20% 정도로 정한 것임

-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보안카드 번호도 접근매체로 판단했고,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나 복제는 물론 텔레뱅킹에서 해커가 전화기 다이얼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위조로 규정하는 등 재판부가 접근매체의 범위와 위조규정을 보다 폭넓게 해석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이번 소송과정에서 은행 측의 허술한 보안성도 다수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는바, 먼저 해커들이 동일한 맥(MAC) 주소로 중국, 한국 등의 IP로 바꾸어가며 접속했는데도 은행 측이 이상징후를 잡아내지 못했고, 또한, 몇 달 전에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한 IP로 접속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음

2. 일본의 이용자 보호 실태

- 인터넷뱅킹 사고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의무적 보상이 아니라 전국은행 협회의 자발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평성 26년) 7월 ~ 9월까지 개인고객은 237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었고, 법인고객은 24건에 대하여 보상을 자발적으로 해준 바 있고, 이러한 보상은 2005년(= 평성 17년)부터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에는 984건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9월까지 678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졌음
- 보상률은 최하 92.3%이며, 100%에 달하는 년도 있는바, 인터넷 뱅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는 일본의 실상을 알 수 있음 (아래 표 참

조, 출처 : 일본 전국은행협회)

時 期	対応方針 決定済件数 (①)	うち補償件数 (②)	補償率 (②÷①)
平成20年度	56	52	92.9%
平成21年度	13	12	92.3%
平成22年度	32	32	100.0%
平成23年度	87	84	96.6%
平成23年 4月～ 6月	20	20	100.0%
平成23年 7月～ 9月	40	38	95.0%
平成23年10月～12月	25	25	100.0%
平成24年 1月～ 3月	2	1	50.0%
平成24年度	101	95	94.1%
平成24年 4月～ 6月	19	19	100.0%
平成24年 7月～ 9月	19	18	94.7%
平成24年10月～12月	29	27	93.1%
平成25年 1月～ 3月	34	31	91.2%
平成25年度	974	963	98.9%
平成25年 4月～ 6月	122	121	99.2%
平成25年 7月～ 9月	236	233	98.7%
平成25年10月～12月	248	244	98.4%
平成26年 1月～ 3月	368	365	99.2%

-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해 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은행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보상비율이나 보상 태도를 고려하건대 전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3. 발제 및 개정안에 관한 의견

1) 전체적인 의견

- 전체적으로 발제의 내용이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현행법으로도 법

해석과 법적용을 제대로 잘 했으면 충분히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훌러갔기에,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취지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2) '접근도구'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 실제 사례에서 이용자의 중과실 인정에서 핵심 문제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이고 이를 접근매체로 보는 경우 중과실의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보안카드 번호가 접근매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의 견해이나, 금융위원회는 보안카드 번호를 접근매체로 보고 있음.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해석은 접근매체의 문리적 해석을 벗어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보안카드 번호를 접근매체로 보지 않은 발제자의 의견에 찬성하고, 이를 접근도구로 분류한 취지에 찬성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할 것.

3) ‘무권한거래’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바, 이 중 전자식 카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자기록 형태의 정보임. 한편 우리 형법은 문서는 위조·변조로, 전자기록은 위작·변작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작은 권한 없이 전자기록 등을 만드는 것 및 허위 내용의 전자기록 등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그런데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에서, 전자식 카드를 제외한 접근매체, 예컨대 전자서명생성정보(공개키), 공인인증서 등은 전자기록 형태이므로 ‘위조’가 아니라 ‘위작’이라는 표현이 정확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기록’의 ‘위조’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되게 된 것임

○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권한거래’를 따로 정의하고 이를 보상 사유로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4) 이번 개정안은 허술한 현행법 때문에 나온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개정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이용자 보호를 관찰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현행법 제9조의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토론문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과 이종걸 의원 개정안

(주)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

■ 토론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과 이종걸 의원 개정안

(주)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 본 개정안은 보안 사고로 인한 책임을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여러 관점에서 그러한데,

첫째로 금융 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의 회사들과 협업하는 데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많은 사례를 통해 볼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의미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외부 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러한 은행 등 금융 회사들의 외부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주저하는 부분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서 비롯한, 금융기관의 책임문제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 등 금융 회사들은 이미 평판에 대한 사회적 손실도 있으며,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선 보상후, 외부 협력사에 구상권을 청구하

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적이다. 그렇다보니, 금융 사고 발생시의 평판 리스크 및 재무적 리스크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거나, 여론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닌 경우, 금융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부담이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무관한거래로 인한 책임이 명백히 금융 소비자에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경우, 그 책임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내역에 대한 1개월내 통지 등이 금융 회사가 아닌 실제 거래를 주관한 전자금융 업자 등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 회사들이 기존에 짊어지고 있었던 부당한 책임 소재 추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해 질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보안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책임의식 강화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보안 사고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간, 명백한 금융 소비자의 잘못에 의한 금융 사고라 하더라도, 여론이나 국민 정서상 ‘비록 그와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고’ 감독 당국이나 해당 금융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실제 사고를 일으킨 회사(PG사업자 등)는 따로 있어도, 금융 기관이 그 여론에 의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창발하는 많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 1)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식을 가지고 접근매체나 거래 기기 등의 접속 등에 있어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 2) 소비자 본인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안은 금융 당국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이자 주체인 소비자 본인이 책임감있게 관리하고 주의해야하는 부분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어, 다양한 선진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방안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윤민섭

■ 토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방안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윤민섭

전자금융거래 중 전자자금이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는 i) 무권한 자에 의한 거래지시로 인한 전자금융사고와 ii) 사기·강박 등 이용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거래지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해킹이나 피싱 또는 패밍 등에 의한 무권한 거래이고, 후자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구조를 살펴보면 무권한 거래 또는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자금이 예금주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는데, 이때 타인명의의 통장은 대포통장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계좌이체이후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 하더라도 가해자가 즉시 인출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즉 전자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때 문제는 배상과 피해범위의 축소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 피해환급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안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서 소비자피해의 일

부가 방지되거나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배상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의 문제는 상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농협에서 1억 2천여만원이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인 농협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농협으로부터 사고조사를 의뢰받은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보안카드 난수 등)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라고 적시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농협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무권한거래를 인지한 것은 무권한거래 시점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가가 문제된다. 물론 무권한거래로 이익을 본 범죄자가 피해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기관 중 누가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하는가라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제10조는 금융기관 등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접근매체 등에 대해 이용자 즉 소비자에 관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매우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무권한거래”라는 포괄주의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몇 가지에서 보완이 필요점이 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10조1항을 개정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단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되는데, 이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서도 이용자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무기명 채권이고, 이용자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후 그냥 사용하다가 분실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과연 이때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가 효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카카오 뱅크월렛과 같이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급결제부분에서의 핀테크의 경우 자금의 흐름과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카카오 뱅크월렛을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 자금은 A에게 연계된 계좌에서 B에게 연계된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A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는 B의 연계계좌가 아닌 B라는 사람의 카카오 뱅크월렛으로 이체됐다고 생각한다. 즉 이용자는 은행이 아니라 카카오 뱅크월렛으로 이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무권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자료 1

IT · 금융 융합 지원방안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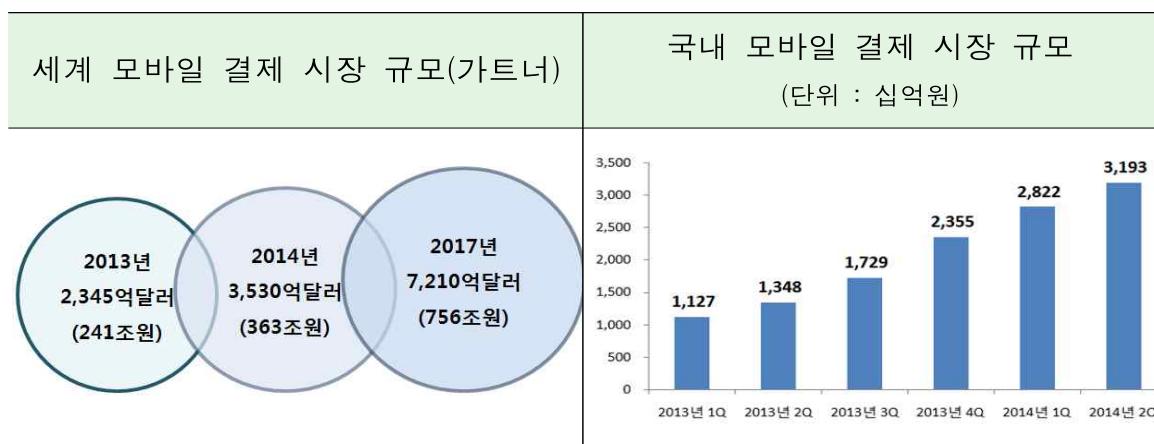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2015. 1. 27.

금 융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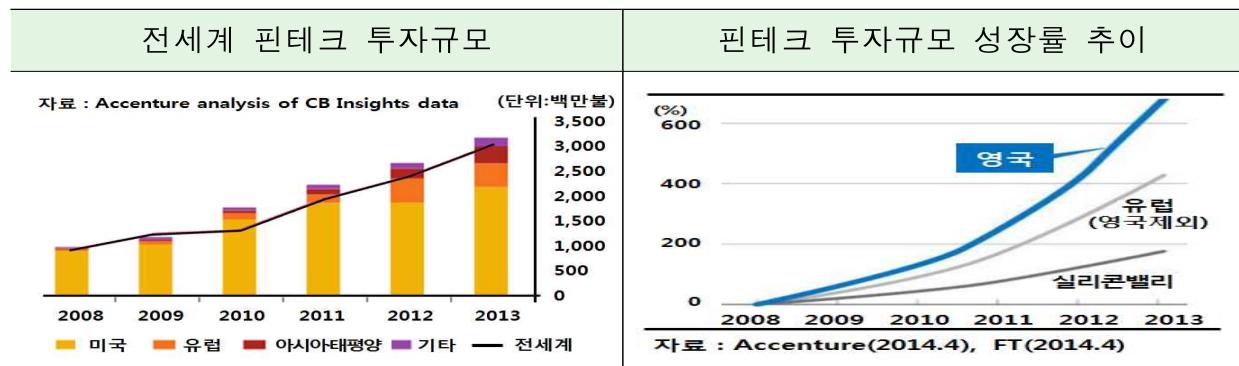
I. 추진 배경

- 전세계적으로 IT·금융 융합(핀테크, Fin-tech) 트렌드가 확산
 - 국경간 상거래 급증,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확대로 세계의 IT·금융 융합 트렌드는 국내 소비자·산업의 거래습관* 및 환경에 변화를 촉발



* Paypal 등 주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친밀성 증대 등

-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 특히,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며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핵심으로 부각

- 주요 금융선진국 역시 현재를 핀테크 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
 - * 예 : 영국 재무부,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계획('14.8.6) 발표
-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적은 틈새시장 이익, 융합형 서비스 포용력이 낮은 규제 환경, 금융보안 우려 등으로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 금융산업의 성숙도, IT강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IT·금융 융합 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II.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IT·금융 융합 지원 업무계획의 목표와 과제 (요약) 〉

■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 IT · 금융 융합 지원의 방향 및 금융보안의 토대 〉

- 펀테크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 이러한 펀테크라는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변혁시키고
 - 나아가 기존의 업종규율과 규제방식은 융합·창의·혁신을 요구하는 펀테크 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
- 금융위는 이러한 인식 하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3가지 핵심적 지원방향과 그 토대가 되는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마련
 - 우선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율·창의·혁신에 의한 IT·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규제 패러다임 전환**),
 - 그 위에 창출된 펀테크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고치고(**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 혁신적 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분야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것임(**펀테크 산업 육성**)
 - 첫째,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법규정으로 사전에

세세하게 설정해놓은 틀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기 어려움.

- 아주 작은 펀테크 서비스까지 사전심사를 받고,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보안기술만이 강제화 된 환경에서는, 금융회사는 기존 틀 내에서 안주하고, 펀테크기업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혁신은 어려움
 -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펀테크 지원의 최고 핵심과제일 것임
 - 이를 위해 외국에는 없는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관련 규율의 핵심원칙인 기술중립성을 지키고, 원인과 능력에 따른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규제의 틀이 변화되어 혁신이 자유로운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다음으로 금융회사들 그리고 펀테크기업들이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
- 둘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해야 함.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모바일로의 변화 트렌드를 기존의 금융업권별 규율이 수용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함
- 창구거래·대면거래 중심으로 규율된 각 업권별 제도는 온라인·

모바일의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대중성을 수용해야 함

-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빅데이터 활용 등과 같이 기존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등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 또는 제도의 도입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인 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임.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IT기업의 기술 혁신을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함.
- 특히, 펀테크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활발한 지급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들간의 적극적 협업도 추진할 필요
- ICT 강국의 저력과 결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
- 마지막으로, 펀테크 추진도 금융보안을 토대로 해야 함.
-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금융서비스는 결국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것임. 미국 타겟사 정보유출, 우리나라 카드사 정보유출 등의 사례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향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추진함에 있

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토대로 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 다만, 보안규제의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음
 - 사후점검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노력을 강화해서 오히려 보안수준이 제고될 것임
 - 한편,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 및 전자금융업의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안'관련 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임
 - 따라서, 이미 추진 중인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13.7월)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4.3월)은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
- * 이하 용어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전금규정

III. IT·금융 융합 지원과제 주요내용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
-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

사전 규제 최소화

-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여(전금규정 개정, 2분기),
 -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
 - 특히,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 공지, 취약점 개선 및 보완조치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전금법 개정)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은 일괄 폐지·개선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상품이

탄생토록 유도

-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 폐지(전금규정 개정, 2분기)
 - ※ 다만, 사용의무의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 당분간 기존 관행·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책임부담 명확화

-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전금법 개정)
-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지급거래금액이 증가하여 사고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케 하고자
 -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 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전금규정 개정, 2분기)
- 입법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유권해석·민원답변 등이 포함된 설명서(FAQ)를 제작·공개하며, 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
- 오프라인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효율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 및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방안 마련(2분기중)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 강구
 - *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검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의 빠른 안착을 위해,
-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증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정책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

*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내역 및 발행인의 발행내역을 관리하는 기관

** 인터넷 펀딩포털을 개설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모집을 중개하는 업체

빅데이터 활용 지원,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등

-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同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되고 구조화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
-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6월), 매체분리 원칙* 폐지(1월)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

* 전자금융거래와 거래인증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한 전금규정(§34)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 핀테크 기업은 낮선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新성장 산업으로 육성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 금융위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
 -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제공(1분기)하고
 -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2분기)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
 - 산업은행·기업은행은 '15년 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투자를 실행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을 제공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전금법 개정)하되

*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이후 재정비된 업종분류에 맞추어 추후 조정

-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전금법 개정)

-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진입규제 마련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전금법 시행령 개정, 2분기)
 -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예 :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
 -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 기술발전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금융업종 체계를 입법공백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업종 규율로 재설계 (전금법 개정)
 -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 IT기업 등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겸영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 개선(전금법 개정)
 - 예컨대, PG사업을 하는 통신사의 경우 고정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자산 보유 비중을 합리적으로 개선
 - * 현재 총자산 대비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겸업 PG의 경우 평균 미정산잔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 검토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 ◆ IT·금융 융합 지원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 ◆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 금융회사 및 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PCI-DSS, ISMS 등) 획득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안인증체계를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활용도록 지원
- 금융권 보안관리를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Enterprise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수행토록 유도
-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를 지속 노력하고, 「금융권 FDS 추진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 및 우수 사례 공유 추진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전금법 §21)를 구체화하여 금융권역 내 금융보안 관련 보호가치를 명확화(전금법 개정)
-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경주

온라인 채널상 불완전판매 방지

- 온라인 금융상품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감독 내실화
-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온라인 맞춤형 상품설명서, FAQ 제공(2분기) 및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 규제를 개선

IV. 기대효과

- (이용자 측면)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편의 제고
 -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
 -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가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채널이 제공되며
 -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 가능
 -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 모바일 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에서의 편의성이 큰 폭 증대
 -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결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결제가능 범위는 증가

□ (금융사 측면)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적 경쟁력 확보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법을 해외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직접진출에 활용
- 금융회사의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 차별적 경쟁력 확보
-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안·인증기술의 활용과 자체적·사후적·지속적 보안 노력을 통해 보안수준의 제고 가능

□ (산업적 측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산업 성장

-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
- 금융회사·IT회사 등 다양한 주체간 연계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져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

V. 추진계획

□ IT·금융융합 지원 관련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

-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

*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내 개정 완료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방안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금번 대책으로 끝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15년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
 - 또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 펀테크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

자료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2. 24.

발의자 : 이종걸 의원

찬성자 : 이종걸, 신정훈, 추미애김영록, 장병완
· 유인태조정식, 강창일, 김관영백재현,
김성곤, 신경민 문병호 의원 (13인)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접근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 역시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상 정의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고 현행 법령에 금융회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

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 상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첨단 ·고도화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및 범위를 법령으로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법론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확대해석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상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호되는데 반해,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등이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에 분실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무권한거래’ 및 ‘접근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2조 제23호 및 제24호 신설)
- 나.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 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제51조제3항제1호)
- 다.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 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함(안 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24. “접근도구”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또는 접근매체나 다른 접근도구와 결합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는 제외한다)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고 거래 후 1월 이내에 거래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무권한거래”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9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날부터 2월(이하 “이의제기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거래내용에 기재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권한거래(이의제기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제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3항 중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를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을 “(이용자의 통지 및 금융회사 등의 일부면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에 분실이나 도난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통지 없이는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무권한거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가 무권한거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권한거래 총액을 그 한도로 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만원
2.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0만원
3.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알고, 통지하지 않거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합
 - 가. 50만원
 - 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③ 이용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 사유를 입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의제기기간 또는 제2항 각 호 규정에 따른

통지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를 “거래내용을 제공하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내용 제공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1. ~ 22. (현행과 같음) <u>23.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u> <u>또는 그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u> <u>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u> <u>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u> <u>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u> <u>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u> <u>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u> <u>를 말한다.</u> <u>24. “접근도구”란 전자금융거래에</u> <u>있어서 독립적으로 또는 접근매</u> <u>체나 다른 접근도구와 결합하여</u> <u>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u> <u>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는 제외</u> <u>한다)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u> <u>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u> <u>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u> <u>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u>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 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 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 ----- ----- ----- -----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후단 신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의 책임) ① -----
----- 무권한거래 -----

--.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
자금융업자는 무권한거래가 아
님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다.

〈작제〉

〈작제〉

〈작제〉

② _____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1. 이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2월(이하 “이의제기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거래내용에 기재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권한거래(이의제기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 제2호과 같음)

③ -----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4) (생략)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자의 통지 및 금융회사 등의 일부 면책)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에 분실이나 도난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통지 없이는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무권한거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가 무권한거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권한거래 총액을 그 한도로 한다.

〈신 설〉

1.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5만원

〈신 설〉

2.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도과후, 이의제기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0만원

<신 설>

3.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알고, 통지하지 않거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합

가. 50만원

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 거래 총액

③ 이용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 사유를
입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의제기기간 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장하
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제5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3) _____

<p>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7조제2항</u>을 위반하여 <u>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u> 아니한 자</p> <p>2. ~ 12. (생략)</p> <p>④ (생략)</p>	<p>----- ----- ----- ----- -----.</p> <p>1. <u>제7조제1항 및 제2항</u>----- ---<u>거래내용을 제공하지</u>----- -----</p> <p>2. ~ 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